

2025년 강소특구 지역 특성화 육성사업(울산울주) 기업자문지원 심화컨설팅 공고(1차)

UNIST에서는 울산·울주 강소 연구개발 특구를 활성화하고, 특구 내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 울주 강소특구 지역 특성화 육성사업」 기업자문지원 심화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울산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

1

공통사항

- 지원규모: 총 28백만원 (기간내 소진시까지)
- 신청기간: ~ 2025. 10. 31.(금) 18:00까지
- 사업기간: 확약일 ~ 2025.12.31.
- 지원내용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2025년 지원규모
기업 혁신 지원	기업자문지원 (애로기술, ESG컨설팅)	목적	지역 내외 특화분야 및 기술사업화 전문가 Pool 구축으로 기술 및 사업화 역량 내재화	28
		내용	· 전문가 활용비 지원 - 사업분야 관련 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 활용을 위한 비용 지원 - 일반컨설팅 수행기업 중 평가를 통한 심화컨설팅 최대 3.5백만원 지원	
		대상	· 기업자문지원 일반컨설팅 수혜기업	

※ 사업예산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기업자문지원 일반컨설팅 수혜기업: 2025년 기업자문지원 일반컨설팅 수행 및 완료 기업

기업별 지원내용

구분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지역기업 성장지원	기업자문지원	심화컨설팅 최대 3.5백만원	확약일 ~ 2025.12.31.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10. 31.(금) 18:00까지
- 세부사업별 담당자 측으로 이메일 제출(메일제목: 사업명_기업명)

사업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기업자문지원 심화컨설팅	임종희	052-217-1765	ijhee@unist.ac.kr

■ 지원절차(공통)

단계	일정(예정)	추진내용
모집공고	2025.10.14.	- UNIST 홈페이지 등 공고 게재 - 일반컨설팅 수혜기업 대상 안내
↓		
신청서접수	~ 2025.10.31.	- 지원신청서 과제내용 및 제출서류 검토
↓		
선정평가 (UNIST)	2025.11.05.	- 신청기업 선정평가
↓		
과제 협약 등	2025.11.10.	- 수혜기업 협약
↓		
사업결과점검 (UNIST)	2025.1 중	- 결과보고서 접수 및 성과 취합
↓		
세부사업 정산	2025.1 중	- UNIST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 정산 및 과제 종료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검토사항

검토사항	내용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신청 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극히 불량(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청기업이나 신청기업의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 (기업자문지원의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기술핵심기관은 신청기업이나 신청기업의 총괄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1. 기업의 부도 2.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3.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4.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의 신용등급 'BBB'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전 지원 제외 조치사항	- 신청기업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개별과제 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책임자, 외부전문기관, 외부전문기관대표자의 경우 - 총괄주관기관에 개별과제 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책임자, 외부전문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신청자는 신청 과제에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 기간 등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기관은 UNIST의 요청에 따라 수행과제의 진행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UNIST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여야 함
- 선정된 자는 협약 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사업비에 대한 정산 서류 및 사업성과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UNIST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선정된 기관은 협약 종료 이후 5년간 UNIST 또는 사업관리기관 소속 직원의 과제 진행 현장 확인, 관련 서류의 열람,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등 성과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기관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울산울주 강소특구 특화개별사업 운영관리 자체기준

※ 울산울주강소특구 사업 수행 시 울산울주 강소특구 특화개별사업 운영관리 자체기준이 적용되며, 개정 등 규정 변경 시 협약일을 기준으로 적용됨

4

세부지원내용 : 기업자문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 내외 특화분야 및 기술사업화 전문가 Pool 구축으로 기술 및 사업화 역량 내재화

■ 사업내용

- 기업 수요중심의 기술 및 경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One-point 전문가 자문 지원
-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기업별 ESG 컨설팅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28백만원 (기간내 소진시까지, 기업별 최대 3.5백만원 지원)

※ 상기 예산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고, 사업비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25.10.31.(금) 18:00까지

■ 사업기간: 확약일 ~ 2025.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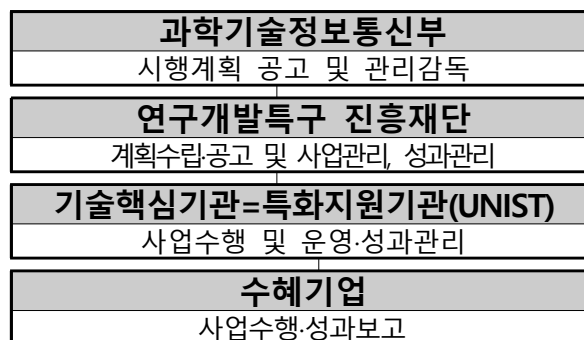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기업자문지원 일반컨설팅 수행 및 수혜 기업

■ 지원내용

- 애로기술, 기술개발, 제품화, 기술사업화, 기술마케팅 등 기술분야 및 법률, 회계, 세무, 투자 등 경영분야에 대한 One-point 자문
- 수요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ESG 경영 컨설팅 및 자문
 - 지원방법: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통해 자문 실시

3. 추진체계



4.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업은 『[별지4-1] 신청서 양식(기업자문지원 심화컨설팅)』을 담당자 전자메일로 제출

- 담당자: UNIST 산학협력단 특구육성팀 임종희 (052-217-1765)

- 전자메일: ijhee@unist.ac.kr

※ 필요시 우편 등으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업자문지원의 경우 선정평가 없이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 제출 자료 목록

필수	① 기업자문지원 신청서 (별첨자료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시	① 연구소기업 등록증 ②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 기타사항: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없음, 3책 5공 적용 제외

강소 특구	특화분야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KSIC 매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UNIST (울주)	미래형 전지 산업	이차전지	전기차용 고용량 배터리 양극/음극소재, 이차전지 고속충전을 위한 전해질 제조기술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M701)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9) / 1차 비철금속 제조업(C242) / 금속 주조업(C243)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2) /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C259)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 /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9)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C340) / 식물 직조 및 식물제품 제조업(C132) /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C211)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C301) /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C289) / 일차전지및 축전지제조업(C282)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장치제조업(C281) / 전자부품제조업(C262) / 코크스 및 연탄제조업(C191)/기초화학물질제조업(C201) / 기타화학제품제조업(C204)
		수소전지	수소연료전지분 리막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M701)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9) / 1차 비철금속 제조업(C242) / 금속 주조업(C243)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2) /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C259)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 /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9)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C340) / 식물 직조 및 식물제품 제조업(C132) /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C211)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C301) /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C289)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C281) / 전자 부품 제조업(C262) /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C201)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C204)
		태양전지	유리창 부착형 투명 태양전지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M701)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9)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2) /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C259)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 /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9)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C340) / 식물 직조 및 식물 제품 제조업(C132) /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C211)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C301) /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C289)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C281) / 전자 부품 제조업(C262)
		탄소섬유 복합재	탄소섬유 복합재 기반 경량 배터리 팩 구조물, 3D프린팅 기반 경량부품 생산장비, 초경량/고강도 프레임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M701)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9)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2)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 /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9)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C340) / 식물 직조 및 식물제품 제조업(C132) /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C211) /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C289)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C281) / 전자 부품 제조업(C262) /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C191) /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C201)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C204) / 화학섬유 제조업(C205)